



2021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문

2021. 1.



I. 경영안정자금

- ◆ (이자차액보전 지원 9,100억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별 지원한도를 확대함
 - 일반기업자금 : 업체당 10억원 이내(일반+관광), 최대 2.0% 이내 지원
 - 우대기업자금 : 업체당 100억원 이내, 최대 3.0% 이내 지원
 - ① 지정서 및 선정서 우대 : 업체당 50억원 이내, 최대 2.7% 이내 지원
 - ② 고성장기업 : 업체당 30억원 이내, 최대 2.5% 이내 지원
 - ③ 고용창출기업 : 업체당 50억원 이내, 최대 3.0% 이내 지원
 - ④ 수출기업 : 업체당 30억원 이내, 최대 2.2% 이내 지원
 - ⑤ 산업확충기업 : 업체당 100억원 이내, 최대 2.5% 이내 지원
 - ⑥ 창조경제혁신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최대 2.5% 이내 지원
-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5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보험가입 지원, 지원대상을 보험가입 주요 가입업종으로 확대
 - 매출채권보험(공적보험) 보험료 지원 (총보험료의 80% 이내, 업체당 5백만원 이내)
- ◆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기업채무에 대해 보증지원, 지원대상을 물산업, 특허권사업화기업 등으로 확대
 - 협약보증 지원 (업체당 5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0.2%p 감면)

1. 이자차액보전 지원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3. 협약보증 지원

1. 이차차액보전 지원

1 지원개요 [공통사항]

1 지원목적

○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

2 지원규모 : 9,100억원

3 지원대상 : 공장 및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구분	업종요건	매출요건
제조업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비제조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매출 확인 - 손익계산서 확인

[비제조업 영위여부 확인]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고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부분(전문)정비업 제외
2	서비스업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서비스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허증,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면허)업체,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허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해당등록증에 사업자등록증은 해당되지 않음(산업과 관련된 협회 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되는 서류만 해당함)	
11	관광업	인천관광공사 추천기업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항공 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라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도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ex. 포장 및 충전업 등

4]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지원내역]

지 원 대 상	최대 지원한도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선택)
일반기업	10억원	기본지원율	1년 ↳ 만기 일시상환
우대기업	10억원 ~ 100억원	기본지원율 + 우대지원율 (0.2%p~1.0%p)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	2천만원	기본지원율 + 우대지원율 (0.5%p)	4년 ↳ 1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 48개월 균등 분할상환

- ※ 우대항목에 따른 업체별 지원한도 및 지원율은 우대자금별 세부내용 참조
- ※ 대출이 완료된 대출금에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음
- ※ 관광업종은 인천관광공사 추천기업에 한함

[이차보전 지원율 체계]

구 분	이차보전 지원율			
기본	● 기업 대출금리별 기본 지원율(차등지원)			
	지원업체 용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2%	5.01% ~ 5.25%	1.2%
	1.51% ~ 2.00%	0.3%	5.26% ~ 5.50%	1.3%
	2.01% ~ 2.50%	0.4%	5.51% ~ 5.75%	1.4%
	2.51% ~ 3.00%	0.5%	5.76% ~ 6.00%	1.5%
	3.01% ~ 3.50%	0.6%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우대	● 우대항목에 따른 우대 지원율 (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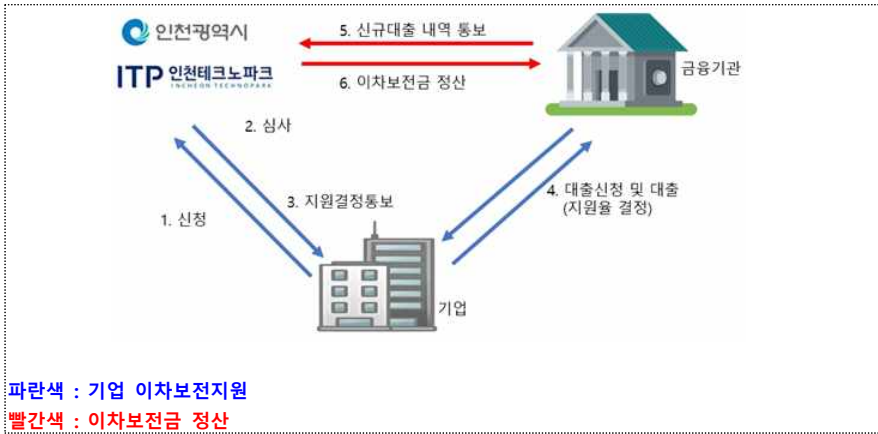
※ 이차보전 지원율 산출식 및 세부기준

지원율 산출식	<p>1)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율을 합산하여 최종지원율 산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기 본 지 원 율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우 대 지 원 율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합 산 지 원 율 </div> <p>-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지원율이 합산됨</p>
세부 기준	<p>1) 이차보전 지원율 확정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에서 신규대출내역 보고 시 대출일자로 보고할 기준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금리에 맞추어 지원율 확정 <p>2) 대출금리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일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p>

※ 연장지원 세부기준

신규신청	신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상환하였거나 만기가 지난 기업
연장신청 (재대출)	신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업
연장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일 1개월 전에 신청가능 - 만기일 1개월 전 연장신청이 아닌 경우 반려되며 이후 재신청 필요 (조기상환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만기1개월전이 아니더라도 신규신청은 가능함) - 연장신청건은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사전 지원통보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1회에 한정된 우대지원은 연장지원 불가 - 연장신청 시 세부자금은 자금별 요건을 확인하여 새로 선택해야 함 (기존자금이 우대자금이었다도 연장신청 시 우대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반으로 지원) - 연장지원도 신규지원처럼 기존 지원이력에 따라 한도가 산정되어 지원이 안될 수 있음 - 기존 상환중인 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하고 잔여한도를 받는 기업은 신규신청으로 체크 - 만기도래자금이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인경우 신규신청만 가능함

5 이차보전 지원체계



6 업무처리 절차

①	신청	기업 →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심사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신청 기업의 서류 제출상태에 따른 심사 진행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 분기별 한도배정 없이 온라인 선착순 지원
③	지원결정 통보	ITP →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한 지원결정 통보 (통보 시기 : 1주일 단위 또는 지연 시 사전안내)
④	대출신청 및 대출(지원율 결정)	기업 ↔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대출금리 구간에 따라 지원율 결정
⑤	신규대출 내역통보	은행 →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대출내역 통보 : 월별 (은행 → ITP) 신규대출내역 입력 : 수시 (ITP)
⑥	이차보전금 정산	은행 ↔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차보전금 청구 : 분기별 (은행 → ITP) 이차보전금 지급검토 및 확정 : 분기별 (ITP) ※ 개별기업 사후관리 및 은행 과오청구 등에 따른 정산 이차보전금 지급 : 분기별 (ITP → 은행)

2 일반기업자금

1 지원대상 : 공장 및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구분	업종요건	매출요건
제조업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비제조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매출 확인 - 손익계산서 확인

※ 업종판단은 지원개요(공통사항) 참조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코로나19 특별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 SIMS(통합관리시스템)에서 타기관 운전자금으로 당해연도에 대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경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지원대상	업체별 최대한도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선택)
일반 (관광업포함)	10억원	기본지원율	1년, 2년, 3년

※ 기본지원율은 지원개요(공통사항) 참조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이내에서 최대 10억원
 - ※ 5천만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
 -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원함
 -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원함
 -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지원함
 - ※ 관광업종은 인천관광공사 추천금액으로 지원함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제한 없음)
 - ※ 업체별 지원한도 확대에 따라 잔여한도 이내 추가지원 가능

4 구비서류

구분	서류	비고	
신규 신청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 1개년도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의 경우 제출생략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의 경우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시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비제조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신청서	온라인 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결산 재무제표

연장신청 대상	신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업 - 만기일 1개월전에 신청가능 - 만기일 1개월 전 연장신청이 아닌 경우 반려되며 이후 재신청 필요 (조기상환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만기 1개월전이 아니더라도 신규신청은 가능함)
연장신청 유의사항	- 연장신청 건은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사전 지원통보 - 1회에 한해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함

3 우대기업자금(지정서 및 선정서)

1 지원대상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우대 항목에 해당되는 지정서, 선정서, 추천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1 업종

구분	업종요건	매출요건
제조업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비제조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매출 확인 - 손익계산서 확인

※ 업종판단은 지원개요(공통사항) 참조

2 우대항목

구분	항목	비고
항시 우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수기업(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제조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유효기간 이내에서 항시우대지원 (우수기업 유효기간 : 2017년 선정기업부터 5년 적용)
1회 우대	우리시 8대전략산업,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협약이후 3개월이내, 당해연도 협약체결기업만 해당함)	유효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우대지원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단,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전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코로나19 특별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 비전,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 중견성장사다리, 품질우수제품 등 시 우수기업 및 선정지정기업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 비전,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 중견성장사다리, 품질우수제품 등 시 우수기업 및 선정지정기업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 비전, 유망, 중소기업인대상 수상, 중견성장사다리, 품질우수제품 등 시 우수기업 및 선정지정기업은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형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지 원 대 상	업체별 최대 한도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벤처기업, 여성친화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제조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비전기업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50억원		
여성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추천서)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년 ↳ 1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 48개월 균등 분할상환

※ 기본지원율은 지원개요(공통사항) 참조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서류 유효기간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 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우대항목별 최대 한도**
 - ※ 5천만원 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
 -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원함
 -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원함
 -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지원함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 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제한 없음)**
 - ※ 업체별 지원 한도 확대에 따라 잔여 한도 이내 추가 지원 가능
 - ※ (사)함인사 추천기업, 관광공사 추천기업은 기관 추천금액에 따라 지원
 - **항시우대 및 1회우대 구분에 따라 유효기간 이내 지원**
 - ※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2017년 선정기업부터 5년 적용, 유효기간이 없는 추천서 및 확인서는 당해연도 서류 증빙

4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 1개년도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의 경우 제출생략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시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비제조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신 청 서	온라인 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국제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 대 (해당 기업)	우 리 시 8대 전략산업	전략산업확인서 1부 (소정양식) ※ 전략산업 관련매출액(전체매출액의 20% 이상)은 세급계산서 증빙, 세급계산서 내용에서 전략산업 영위내용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 등 추가증빙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품질우수제품자정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부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부
	여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부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 통보서 1부
	FTA 인증 수출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1부 (관세청발급)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부 (시, 무역협회 등)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1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부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참여(중기부) 협약서 1부 ※ 협약이후 3개월이내, 당해연도 협약체결기업만 해당함	
제조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증빙서류 1부	

※ **연장 지원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결산 재무제표, 우대증빙서류**

연장신청 대상	신 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업
연장신청 유의사항	- 만기일 1개월전에 신청가능
	- 만기일 1개월 전 연장신청이 아닌 경우 반려되며 이후 재신청 필요 (조기상환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만기 1개월전이 아니더라도 신규신청은 가능함)
	- 연장신청 건은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사전 지원통보
	- 1회에 한해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1회에 한정된 우대지원은 연장신청 불가

4 우대기업자금(고성장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성장기업자금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1 업종

구분	업종요건	매출요건
제조업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비제조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매출 확인 - 손익계산서 확인

* 업종판단은 지원개요(공통사항) 참조

2 고성장기업 충족요건

구분	충족요건
고성장기업 I	1)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2) 창업일자 2018. 01. 02 이전 (2018. 01. 02 이후 창업업체 제외) 3) 최근 결산년도 매출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 (전년대비 감소업체 제외)
고성장기업 II	1)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2)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 창업일자 2018. 01. 02 이전 (2018. 01. 02 이후 창업업체 제외) 4) 최근 결산년도 매출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 (전년대비 감소업체 제외)

* 1)~4)항목 모두 충족, 법인전환일 경우 법인전환 증빙서류 확인 및 매출액 합산

법인전환 증빙서류

- 1)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3) 포괄양수도계약서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단,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코로나19 특별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지원대상	업체별 최대한도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고성장기업 I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고성장기업 II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3%)	3년 ↳ 6개월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구분	확인내용	계산방법
고성장기업 I	매출 증가율	3개년도 매출 평균증가율 20% 이상
	최근년도 매출증가	최근년도 매출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 (전년대비 감소업체 제외)
	창업일자	창업일자 2018. 01. 02 이전 (2018. 01. 02 이후 창업업체 제외)
고성장기업 II	매출 증가율	3개년도 매출 평균증가율 5% 이상
	기업규모	최근 매출액 1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최근년도 매출증가	최근년도 매출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 (전년대비 감소업체 제외)
	창업일자	창업일자 2018. 01. 02 이전 (2018. 01. 02 이후 창업업체 제외)
		* 최근 3개년도 매출 증가율 평균 = (A + B) / 2 A : (2020년 매출액 - 2019년 매출액) / 2019년 매출액 × 100 B : (2019년 매출액 - 2018년 매출액) / 2018년 매출액 × 100 * 매출액 확인 : 손익계산서,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 사업자 매출액 합산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30억원
 -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지원함
 - * 5천만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횡수제한 없음)
 - * 업체별 지원한도 확대에 따라 잔여한도 이내 추가지원 가능

4 구비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업종증빙서류	일반기업 지원기준과 동일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추가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전 2개년도 (2개년도 추가)

※ 연장 지원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결산 3개년 재무제표

연장신청 대상	신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업 - 만기일 1개월전에 신청가능 - 만기일 1개월 전 연장신청이 아닌 경우 반려되며 이후 재신청 필요 (조기상환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만기 1개월전이라도 신규신청은 가능함)
연장신청 유의사항	- 연장신청 건은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사전 지원통보 - 1회에 한해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함

※ 한도산정 예시

구 분	지 원 한 도
경영안정자금 기본한도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총매출액의 1β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
고성장 기업 지원한도	• 최대 30억원 범위 내 지원
수해금액 지원제한	• 기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수해 중인 업체일 경우 해당 대출금(실행 대출금액 전체)은 가능 한도에서 제외
최종한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기본 지원한도 (총매출 1/3)</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고성장 기업 지원한도 적용 (최대 30억원)</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해중인 사자금 지원금액 제외</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최종 지원한도 결정</div> </div>
예시	<p>ex1. 최근결산 매출액 65억원, 현재 경영안정자금 5억원 수해중인 업체가 3개년 평균 매출액 증가 25% 증가로 고성장기업으로 진행할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1β 계산 : 65억원 × 1β = 21.6억원 2) 고성장 기업 지원한도 적용 : 21.6억원 (최대 30억원 범위 내) 3) 수해중인 사자금 금액제한 : 5억원 (21.6억원 - 5억원 = 16.6억원) <p>▶ 최종 결정 : 고성장기업 I (지원한도 16.6억원)</p> <p>ex2. 최근결산 매출액 120억원, 현재 경영안정자금 8억원 수해 중인 업체가 3개년 평균 매출액 증가 7% 증가로 고성장기업으로 진행할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액 1β 계산 : 120억원 × 1β = 40억원 2) 고성장 기업 지원한도 적용 : 최대 30억원 (40억원 → 30억원) 3) 수해중인 사자금 금액제한 : 8억원 (30억원 - 8억원 = 22억원) <p>▶ 최종 결정 : 고성장기업 II (지원한도 22억원)</p> <p>※ 고성장기업 I, II 요건 모두 충족시 고성장기업 I 우선 적용</p>

5 우대기업자금(고용창출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용창출기업자금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1 업종

구 분	업종요건	매출요건
제조업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비제조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매출 확인 - 손익계산서 확인

※ 업종판단은 지원개요(공통사항) 참조

2 고용창출기업 충족요건

구 분	충족요건
고용창출 기업 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2) 창업일자 2018. 01. 02 이전 (2018. 01. 02 이후 창업업체 제외) 3)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 (전년대비 감소업체 제외) 4)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종업원수) 최소 5명 이상
고용창출 기업 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2)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3) 창업일자 2018. 01. 02 이전 (2018. 01. 02 이후 창업업체 제외) 4)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 (전년대비 감소업체 제외) 5)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종업원수) 최소 5명 이상
고용창출 기업 I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및 중앙정부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고용창출 기업 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 (「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인정 안됨)

※ 1)~5)항목 모두 충족,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인천지역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인원 합산, 법인전환일 경우 법인전환 증명서류 확인 및 매출액 합산

법인전환 증명서류

- 1)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2)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3) 포괄양수도계약서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단,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코로나19 특별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기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을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형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자액보전

지 원 대 상	업체별 최대한도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고용창출 기업 I	3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1.0%)	1년 ↳ 만기 일시상환
고용창출 기업 II	3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2년 ↳ 만기 일시상환
고용창출 기업 III	3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3년 ↳ 6개월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고용창출 기업 IV	3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고용창출기업자금 기본한도 : 30억원
- ※ 현재(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지원한도 : 40억원
- ※ 현재(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지원한도 : 50억원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구 분	확인내용		계산방법
고용창출 기업 I	고용 증가율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증가율 15% 이상	• 최근 3개년도 고용인원 증가율 평균 = (A + B) / 2 A : (2020년 고용인원 - 2019년 고용인원) / 2019년 고용인원 × 100 B : (2019년 고용인원 - 2018년 고용인원) / 2018년 고용인원 × 100 * 고용인원 확인 : 연도별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인원
	최근년도 고용증가	최근년도 고용인원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 (전년대비 감소업체 제외)	
	창업일자	창업일자 2018. 01. 02 이전 (2018. 01. 02 이후 창업업체 제외)	
	최소 고용인원	최초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종업원수) 최소 5명 이상	
고용창출 기업 II	기업규모	최근 매출액 1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고용인원 확인 : 연도별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인원
	고용 증가율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증가율 5% 이상	
	최근년도 고용증가	최근년도 고용인원 전년대비 증가 또는 동일 (전년대비 감소업체 제외)	
	창업일자	창업일자 2018. 01. 02 이전 (2018. 01.	

	02 이후 창업업체 제외)		※ 각 해년도 월 평균값으로 산정도 가능함
	최소 고용인원	최초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종업원 수) 최소 5명 이상	
<고용인원 월 평균값 계산방법>			
각 해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체기간 인원의 평균값			
- 신고 기준별 고용인원 평균값 계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고용창출 기업 III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증빙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대상 아님		
고용창출 기업 IV	1)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 ※ 반기신고 업체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30억원~50억원
 -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지원함
 - ※ 5천만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제한 없음)
 - ※ 업체별 지원한도 확대에 따라 잔여한도 이내 추가지원 가능

4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공 통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업종증빙서류	일반기업 지원기준과 동일
	신 청 서	온라인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추 가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3개 신고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고용창출기업IV 반기신고업체의 내용 확인시에 한함
	고용우수인증기업	일자리창출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중앙 및 인천시) 1부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해당 안됨

※ 연장 지원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결산 재무제표, 3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연장신청 대상	신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업 - 만기일 1개월전에 신청가능 - 만기일 1개월 전 연장신청이 아닌 경우 반려되며 이후 재신청 필요 (조기상환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만기 1개월전이 아니더라도 신규신청은 가능함)
연장신청 유의사항	- 연장신청 건은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사전 지원통보 - 1회에 한해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함

※ 한도산정 예시

구 분	지원 한도							
경영안정자금 기본한도	●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총매출액의 1β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							
고용창출 기업 지원한도	● 최대 50억원 범위 내 지원							
수혜금액 지원제한	● 기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해당 대출금 (실행 대출금액 전체)은 가능 한도에서 제외							
최종한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본 지원한도 (총매출 1/3)</td> <td>→</td> <td>고용창출 기업 지원한도 적용 (최대 50억원)</td> <td>→</td> <td>수혜중인 사자금 지원금액 제외</td> <td>→</td> <td>최종 지원한도 결정</td> </tr> </table>	기본 지원한도 (총매출 1/3)	→	고용창출 기업 지원한도 적용 (최대 50억원)	→	수혜중인 사자금 지원금액 제외	→	최종 지원한도 결정
기본 지원한도 (총매출 1/3)	→	고용창출 기업 지원한도 적용 (최대 50억원)	→	수혜중인 사자금 지원금액 제외	→	최종 지원한도 결정		
예시	<p>ex1. 최근결산 매출액 51억원, 현재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수혜중인 업체로 3개년 간 고용인원이 2018년 15명에서 2019년 12명으로 줄었으나, 2020년 20명으로 증가한 경우 ※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인원수가 감소(-20%)하였으나, 최근년도분(2019년도에서 2020년도)은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커서(66%) 평균 증가율 요건이 충족됨(평균 23%) 1) 기본 지원한도 : 51억원 × 1β = 17억원 2) 고용창출 기업 지원한도 적용 : 17억원 (최대 50억원 범위내) 3) 수혜중인 사자금 금액제한 : 10억원 (17억원 - 10억원 = 7억원) => 최종 결정 : 고용창출기업 I (지원한도 7억원)</p> <p>ex2. 2019년도 창업 업체이며, 활발한 사업 운영을 통해 최근 인원수가 1년 사이에 13명 증가한 업체인 경우 - 기존 고용창출기업 I, II 요건만 있었을 경우 창업일자 기준 미충족에 따라 고용창출기업으로의 지원이 불가하였으나, 2019년부터 최근 고용 실적에 대하여도 지원하므로 고용창출기업Ⅳ으로 수혜 받을 수 있음</p> <p>ex3. 사업장이 인천 외 지역 포함 둘 이상 운영중인 업체의 경우 전체 사업장에 대한 고용인원은 최근 3개년 간 감소 추세이나, 인천 사업장만을 고려했을 때는 그 증가율이 높은 경우 고용창출기업으로 진행가능 - 인천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인원 충족여부 확인(타지역분 제외) - 인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관내 고용인원 합산하여 충족여부 확인</p>							

6 우대기업자금(수출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수출기업자금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1 업종

구 분	업종요건	매출요건
제조업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비제조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매출 확인 - 손익계산서 확인

※ 업종판단은 지원개요(공통사항) 참조

2 수출기업 충족요건

구 분	충족 요 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1년간의 직·간접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 간접수출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수출계약이 있는 기업	수령예정인 잔금이 남아있는 수출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 직수출 : 수출계약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 간접수출 : 구매확인서, local L/C(내국 신용장) 등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단,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코로나19 특별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기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형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지원구분	업체별 최대 한도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수출계약 (수출계약의 90% 이내)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2%)	6개월 ↳ 만기 일시상환
수출실적 (수출실적의 1/2이내)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2%)	1년 ↳ 만기 일시상환

※ 우대지원을 0.2%와 별도로 개별은행에서 추가우대 있을 수 있음 (ex)수출입은행 0.3%p 우대)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수출계약금액의 90%(또는 수출실적의 1/2이내)와 최대한도 30억 중 적은금액으로 산정
 - ※ 수출계약금액은 수령 예정금액 범위 이내
 - ※ 수출계약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매입환율 (받을 때)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 매출액의 1/3 기본한도는 5천만원으로 산정함
 -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원함
 -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원함
 -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지원함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제한 없음)
 - ※ 업체별 지원한도 확대에 따라 잔여한도 이내 추가지원 가능

4 구비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의 경우 제출생략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시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업종증빙서류	일반기업 지원기준과 동일	
	신청서	온라인 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소정양식 완납증명서	
추가	수출실적증명서	직수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실적 ※ 발급기관 : 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간접수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실적 ※ 발급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계약서류	계약서, T/T, L/C, 구매확인서 등	

※ **연장 지원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결산 재무제표, 수출실적(계약)서류**

연장신청 대상	신청 시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기업 - 만기일 1개월전에 신청가능 - 만기일 1개월 전 연장신청이 아닌 경우 반려되며 이후 재신청 필요 (조기상환을 예정하고 있을 경우 만기 1개월전이 아니더라도 신규신청은 가능함)
연장신청 유의사항	- 연장신청 건은 만기가 화요일~일요일인 경우 그 주 월요일에 사전 지원통보 - 1회에 한해서만 연장신청이 가능함

7 우대기업자금(산업확충기업)

1 지원대상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확충기업자금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1 업종

구분	업종요건	매출요건
제조업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확인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비제조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매출 확인 - 손익계산서 확인

※ 업종판단은 지원개요(공통사항) 참조

2 산업확충기업 충족요건

구분	충족요건
해외유턴기업	1) 완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내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 부분복귀 :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내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 (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우리시 전입기업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공장만 이전하면 안 되고 본점이전도 필수
신규산단입주(예정)기업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예정기업 또는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내) 기업
재해기업	재해(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단,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코로나9 특별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②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지원대상	지원한도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해외유턴기업	50~10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우리시 전입기업	5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신규산단(강화, 서운, IHP, I-Food Park) 입주(예정)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재해기업	1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③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요건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우리시 전입기업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 공장만 이전하면 안 되고 본점이전도 필수
 - 신규산단입주기업 : 강화/서운/IHP/I-FOOD 산단 입주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입주예정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재해피해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해외유턴기업 : 인천내 공장을 설립한 후 1년이내 제조업

해외유턴기업법에 따른 지원대상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① [완전복귀]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후 국내로 이전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예정) 국내공장의 신증설이 완료된 기업은 완료일로부터 4년이내, 국내공장의 신증설이 미완료된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4년이내 - (해외사업장 기 청산양도) 국외 운영사업장 이미 양도하거나 폐쇄함 - (국내이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이내 국내공장 신증설이 완료되어야 함	① [완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내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②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내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을 적용(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②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을 유지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이전 - (국내이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이내 국내공장 신증설이 완료되어야 함	대상제외
③ [부분복귀] 해외생산량을 축소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간 25%이상 축소하고 국내로 이전 (국내사업장 有) - (축소예정)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 (축소개시)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국내이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이내 공장 신증설을 완료해야함	

○ 지원한도 산정

-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우대항목별 최대한도
 - ※ 재해기업자금은 매출액의 1/3기준 적용제외
 - ※ 5천만원까지는 매출액 관계없이 기본한도로 지원함
 -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원함
 -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원함
 -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지원함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제한 없음)
 - ※ 업체별 지원한도 확대에 따라 잔여한도 이내 추가지원 가능
 - ※ 재해기업은 기존지원, 중복지원 상관없이 지원, 회차에도 미포함
- 재해기업자금은 구조고도화자금의 재해자금 심사기준 적용

④ 구비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의 경우 제출생략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의 경우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시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업종증빙서류	일반기업 지원기준과 동일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추가(선택)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현재유효사항 발급
	사실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입주계약(확인)서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가증빙 필요
	재해피해 증빙서류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1.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2. 해외사업장 증빙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1.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 (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1.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생략) 2.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3. 인천내 운영중인 공장에 대한 기업의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산업확충자금 지원대상 항목은 모두 1회에 한해 적용 가능하므로 연장지원 불가

※ 단, 다른자금(일반, 고성장, 수출 등)으로 연장신청은 가능함

8 우대기업자금(창조경제혁신기업)

1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기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범위

- 시장성, 판로확보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유망기업 (전문 멘토컨설팅 필수)
- 8대전력산업, 벤처 및 이노비즈기업,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등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지원기업*
 - * (분야) 스마트물류랩, 항공정비, 자동차 소재·부품 강소기업, 수출 물류기업, 신선식품수출기업, In-China랩, 온라인 보부상 인상, 공동브랜드 개발·인증기업 등
 - * (기업) 스마트물류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 발굴 공모전 수상기업, 스마트물류창업자 인큐베이팅 지원 및 포럼 우수기업, 민간 엑셀레이터 “스파크랩” 보육지원기업, 항공정비·자동차 소재 부품 분야강소기업, 대한항공 항공엔진 기술기반 중소기업, 종합물류 컨설팅 중소·벤처기업, 신선농수산 식품 해외 수출기업, 중국 현지 네트워크 연계 중소·벤처기업, e-커머스 창업 교육 이수 기업, 중국 직판 온라인기업, 온라인 보부상 시장 진출기업 등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단,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코로나19 특별자금도 기존 지원이력에 포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②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지원대상	지원한도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창조경제혁신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③ 심사방법

- 일반기업에 준하여 심사하되, 업종증빙서류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로 대체 ※ 1회에 한해서 지원
- 업력(창업7년이내 지원)은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창업일로부터 계산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 관계없이 5억원 이내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제한 없음)
 - ※ 업체별 지원한도 확대에 따라 잔여한도 이내 추가지원 가능

④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공 통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당해연도 발급서류)
	신 청 서	온라인 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추 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발급

- ※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은 1회에 한해 적용 가능하므로 연장지원 불가
- ※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은 연장지원이 불가능하며, 기존자금 지원종료 이후 반드시 다른 자금(일반, 고성장, 수출 등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을 제외한 자금) 신규로 심사를 받아야 함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1 지원개요

① 지원목적

-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지원(보험료 할인우대)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유도, 이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방지 및 지속성장 지원

② 지원규모 : 500억원 내외 (※ 2020년 이월예산 지원분 별도)

③ 지원대상

- 공장 및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는 제조업 등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구 분	내 용
업종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서 정해진 전체 지원업종
가입 상품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ex-어음보험, 고정요율 적용상품, 옵션형 및 보험료 환급형 매출채권보험, 창업 성공 패키지보험, 일석e조보험, 인터넷 가입상품 등)

<지원 제외 대상>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그 제한기업의 관계회사(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지원 제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보험계약 제외 업종
G. 도매 및 소매업	.G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G46107중 골동품, 예술품 및 귀금속 중개업 .G46209중 유통배 도매업 .G46331 주류 도매업

	.G46333 담배 도매업 .G46416,G46417중 모피제품 도매업 .G46463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G46492중 귀금속제품 도매업 .G46722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G46799중 총포 도매업 .G47221중 주류 소매업 .G47222 담배 소매업 .G4764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G47830중 귀금속 소매업 .G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H49231중 개인택시 운송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J. 정보통신업	J58211,J58212,J58219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 웨어 제작업 J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K. 금융 및 보험업	전체
L. 부동산업	전체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1531중 부동산 컨설팅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N75999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N76390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R91121 골프장 운영업 .R91221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R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R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R91291 무도장 운영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S96(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체 단, S96911(산업용세탁업), S96913(세탁물공급업)은 보험계약 대상업종으로 운용
T. 가구나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체
U. 국제 및 외국기관	전체

4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 및 보험료 우대

- 지원한도 : 업체당 15억원 (보험(보장)금액 기준)
※ 매출채권보험한도 : 계약자(업체) 한도 100억원, 구매자당 한도 10억원
- 지원기간 : 1년
- 지원내역 : 보험료 지원 (업체당 5백만원 이내)

구분	항목	지원내역
인천시	보험료 지원	▪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 산출보험료의 80% 지원 (최대한도 5백만원)
보증기관	보험료 우대	▪ 보험료 할인 (기준요율의 10% 할인) ※ 다른할인을 적용항목과 중복시 최대로 하나만 적용

2 심사방법 및 서류

1 심사방법

- 지원대상, 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보증기관)
 - 기존지원이력 및 매출액 관계없이 지원하며, 동일연도에서는 **횟수 관계없이 최대5백만원까지 지원함**
- **지원내역통보** (보증기관→ITP)
 - 신용보증기금에서 월별로 시 보험료지원 업체명단(보험금액, 보험료, 인천시부담분에 대한 보험금액 등)을 ITP로 통보

2 심사서류 : 보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항목	파악여부	비고
사업자등록	○	보증기관에서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함 (연락처 등 기업기본정보포함)
재무정보	○	보증기관에서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함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부가치세과세 표준명명원 제출
업종	○	보증기관에서 업종확인 후 업종정보를 제공함
신청서	×	보증기관에서 보험가능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문으로 회신하므로 기업 작성 신청서는 생략
사용계획서	×	보증기관에서 보험가능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문으로 회신하므로 기업 작성 계획서는 생략
개인정보처리동의 및 서약	○	보증기관에서 업체로부터 대신 회수하여 제공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여부	○	보증기관에서 확인함 (신용정보조회서로 체납여부 같음)

3. 협약보증 지원

1 지원개요

① 지원목적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인천시 제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② 지원규모 : 400억원

③ 지원대상

- 공장 및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는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또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등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지원(신규보증)이 가능한 기업

※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 갱신보증을 적용 제외

구분	지원대상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
코로나19피해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항공물류산업	항공물류산업 영위기업
물산업	「물기업 육성 지원사업 업무협약」 관련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	기술이전사업관련 특허권 사업화기업

<지원 제외 대상>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그 제한기업의 관계회사(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지원내용 : 보증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억원이내 (※ 대상자금 : 운전자금)
- 보증조건 : 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감면 0.2%p)

2 심사방법 및 서류

① 심사방법

- 지원대상, 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보증기관)
 - 기존지원이력 및 매출액 관계없이 지원하며, 동일연도에서는 **횟수 관계없이 최대5억원까지 지원함**
- 지원내역통보 (보증기관→ITP)
 - 기술보증기금에서 월별로 시 보증지원 업체명단(보증금액, 보증료, 보증일수, 대출일자, 만기일자 등)을 ITP로 통보

② 심사서류 : 보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항목	파악여부	비 고
사업자등록	○	보증기관에서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함 (종업원수, 연락처 등 기업기본정보포함)
재무정보	○	보증기관에서 확인 후 정보를 제공함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간이과세자 등 부가세제외세 표준증명원 제출시 매출액 정보만 제공함
업종	○	보증기관에서 업종확인 후 업종정보를 제공함
신청서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능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문으로 회신하므로 기업 작성 신청서는 생략
사용계획서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능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문으로 회신하므로 기업 작성 계획서는 생략
개인정보처리동의 및 서약서	○	보증기관에서 업체로부터 대신 회수하여 정보를 제공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여부	○	보증기관에서 확인함 (신용정보조회서로 체납여부 같음)

참고 경영안정자금 한도산정 기준

구 분	지원한도 계산
경영안정자금 (총10,000억원)	
① 이차채역보전지원 (9,100억원) 일반기업 지정서 및 선정서 우대기업 고성장기업 고용창출기업 수출기업 산업확충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 이차채역보전지원은 협약 보증과 매출채권보험지원과 합산되지 않고 이차보전지원 내에서만 이력을 반영함 ※ 최대 지원한도 (-)기존 대출금액 지원가능 한도
②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 타사업과 한도가 합산되지 않고 각각의 사업으로 지원함
③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500억원)	

II. 구조고도화자금 세부 지원계획

- ◆ (기계·공장 및 벤처창업자금) 제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 및 설비 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저리에 용자
 - 기계·공장확보자금 : 업체당 최대 30억원 이내, 기업대출금리 "기준대출금리(변동)" 적용
 - * 기준대출금리 : 신규기준COFIX(자금조달비용)+은행취급수수료0.8%
 - * 공장확보자금 혜택강화 유지 : 업체당 최대 30억원이내, 건물매입은 토지비포함하여 실거래잔금으로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자금 우대 : 업체당 최대 20억원이내, 용자금리 "기준대출금리-0.9%p(변동)" 적용
 - 벤처창업자금 : 창업기업의 저리용자, 업체당 최대 7억원 이내, 용자금리 "기준대출금리-0.5%p(변동)" 적용
 - ※ 기계·공장 및 벤처창업자금 기업대출금리 하한선 : 0.8%
- ◆ (재해기업자금) 재해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운전자금을 무이자로 용자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기업대출금리 "0%(무이자, 고정)" 적용

1. 기계·공장확보자금
2. 벤처창업자금
3. 재해기업자금
4. 상환유예 제도

1. 기계·공장확보자금

1 지원개요

1 지원목적

○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

2 지원규모 : 420억원 (벤처창업자금 포함)

3 지원대상 : 공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① 제조업 전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률 기준 강화 : 30% 이상 → 50% 이상(2020년부터 적용 중) ②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고기계 포함)
기 계 자 금 우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 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협약이후 3개월이내 신청가능함, 당해연도 협약체결기업만 해당함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① 제조업 전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률 기준 강화 : 30% 이상 → 50% 이상(2020년부터 적용 중) ②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 증축을 제외하고는 500㎡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제조면적500㎡미만의 공장 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하지만, 향후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함 (신축) 현재 입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자가공장 있을 경우 지원제외 (매입) 현재 입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자가공장 있을 경우 지원제외

	<p>(중축)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p> <p>(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p> <p>(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p> <p>(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p> <p>(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 제조업체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하는 기업</p>
연구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하면서 ① 제조업 전입률 50% 이상 : [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률 기준 강화 : 30% 이상 → 50% 이상(2020년부터 적용 중) ②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단,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 기계구입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지원총액 10억원을 초과하여 별건으로 지원함)
- ※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및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및 벤처창업자금 합산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입률이 50% 미만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경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④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연계운전 포함)의 저리용자

지원 규모	구분	지 원 사 업	업체당 용자한도	용 자 기 간	대출금리	
420억원 (업체당 총 35억원 이내)	기계 구입 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기 분 일반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대출금리 (I)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 대	스마트공장도입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2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9%p (V)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 확보 자금 (업체당 35억원 이내)	공장확보 (업체당 30억원 이내) 주차장확보 (업체당 5억원 이내)	공장	3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대출금리 (I)
					연구소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벤처창업자금 (업체당 7억원 이내)	기계구입자금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5%p (II)		
					운전자금	3억원
30억원	재해 자금	재해기업	2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무이자 (IV)	

※ 대출금리

기준 대출금리	기준대출금리=사업운영원가		
	1) 사업운영원가 : 신규기준COFIX(자금조달비용)+은행취급수수료0.8% 2) 적용 COFIX : 전분기 종료일의 공시자료 * 산출금리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3) 변동주기 :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변경)		
사업별 대출금리 체계	구분	자금명	사업별 기업대출금리
	I 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기준대출금리
	II 그룹	벤처창업자금	기준대출금리-0.5%p
	III 그룹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기준대출금리+0.2%p
	IV 그룹	재해기업자금	무이자
	V 그룹	특별자금	기준대출금리-0.9%p
단, 사업별 기업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기업대출금리는 0.8%로 적용함 (2021년 대출분부터 적용, IV 그룹-무이자에는 적용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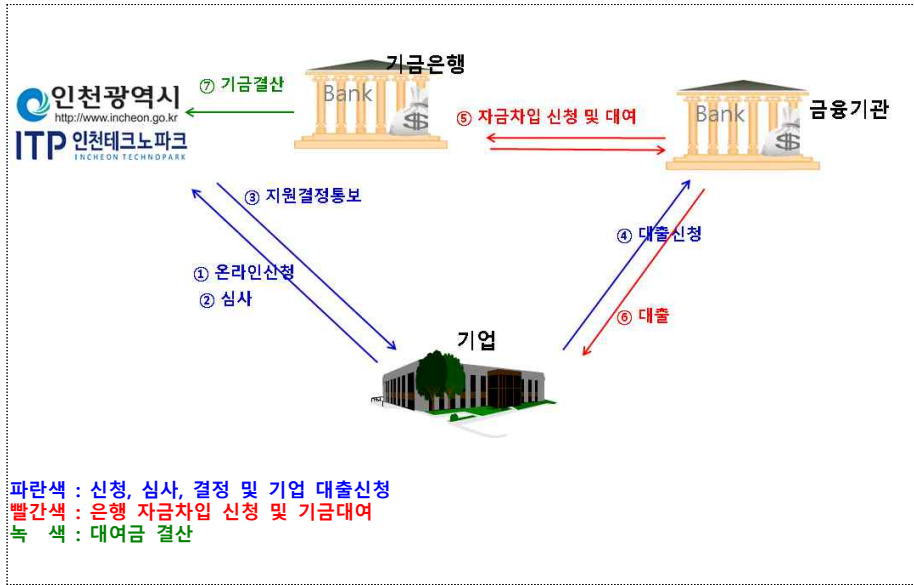
※ 주차장설치자금 세부지원내역

구분	내용	비고
지원자금	구조고도화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국가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기업** * 부설주차장 : 지하 및 옥상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등 (기계식 및 철골 등 공작물일 경우 향후 유지조건으로 지원함) ** 공장신축일 경우 법정대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허가신고 등을 완료한 기업	
지원규모	기계·공장 지원규모내 포함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주차장확보에 소요되는 건축 또는 설치비용)	
용자기간	8년 (3년거치 5년분기별 분할상환)	
대출금리	I 그룹 (신규기준COFIX(자금조달비용)+은행취급수수료0.8%)	
구비서류	①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② 건축허가서(신고필증)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신고필증) ③ 부설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주차장공사에 대한 개별명세서 ④ 건축물관리대장 - 사후에 추가된, 증기된 현황확인	- 허가 또는 신고서류에서 용도가 주차장으로 확인되어야 함 - 허가 또는 신고서류에서 용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 공문확인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사후관리	① 사업완료서(공장) : 사업완료서(업체작성), 세금계산서, 공장등록증, 공장사진 ② 주차장증빙서류 :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카드 사본(주차장현황사진 및 평면도 포함),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완료서 제출시 주차장증빙서류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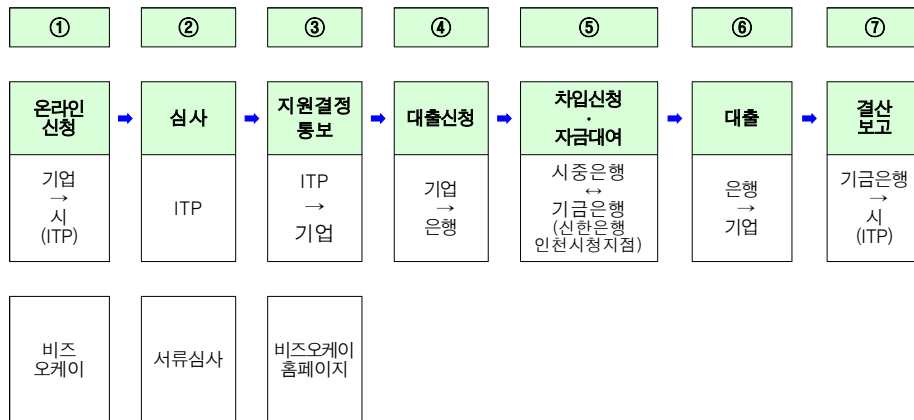
▶ 주차장설치는 주차장법에 의해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설치이후 관련기관으로부터 부설주차장관리카드를 받고, 신축일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관리카드를 제출해야함 (기존 건축물에 추가되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관리카드 발급 및 건축과 통보로 건축물대장 용도가 변경됨)

2 지원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

1 지원체계



2 업무처리 절차



3 심사방법 및 서류

1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기계구입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 ※ 일반기계구입자금 10억원 이내, 스마트공장도입우대 20억원 이내
 - 공장확보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 ※ 연구소설치자금 10억원 이내 포함, 주차장설치자금 5억원은 별도
 - 기계구입 및 공장확보자금 합산총액은 30억원은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지원총액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 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기계	지원 제외	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기계 포함한 설비로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공장	지원 제외	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F가격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국내 구입이 가능한 경우는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외산시설 구입가격의 원화환산은 신청일 현재 외국환율고시 중 전신환 (보낼 때, 고객이 살때, 매도율)적용 <p>※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거래조건이 하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넓게 채용되고 있으며,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과 운임·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 CIF가격이란 수출입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도착항 인도가격)</p>
기타	지원 제외	금액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비에 한해서만 지원 · 공사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기타	지원 제외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해 실거래 잔금이내에서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집단 중도금 대출실행 기업은 중도금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 대출잔이 불가피한 대출이었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지원 제외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등) · 전체면적에 대해 자가사용이 아닌 임대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이후 공장등록이 어려운 경우 지원에서 제외됨
기타	지원 제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 변경 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은행이관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이 장기(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공장확보자금(지식산업센터 최초분양) 한도산정 기준변경**

- **(한도확대)** 집단 중도금대출을 통한 최초(초기)분양시에는 중도금 대출건도 잔금지원시 시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지원한도 (준공이전 분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건물 실거래 금액의 잔금범위 이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건물 실거래 금액의 잔금범위 이내 * 집단 중도금 대출실행 기업은 중도금 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확인서류 :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사례적용	총 추천가능금액 : 210백만원 (건물가액1,050백만원×20%)	총 추천가능금액 : 945백만원 (건물가액1,050백만원×90%)

※ 분양권 전매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 대출건이 불가피한 대출이었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함

□ **사례예시**

구분	사례내용	개선안 적용
사례1	A업체는 산단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이후 중도금대출* 이 완료된 후 잔금과 중도금대출건에 대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장확보자금을 신청함 * 중도금대출 : 최초분양이며 집단으로 특정은행에서 특정금리로 대출	○
사례2	A업체는 산단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매수(권리의무 승계)하였으며, 분양권 금액에는 중도금대출* 이 포함되어 있음. 잔금과 중도금대출건에 대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장확보자금을 신청함 * 중도금대출 : 최초분양이며 집단으로 특정은행에서 특정금리로 대출	○
사례3	A업체는 산단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으며, 최초(초기)분양이 아니어서 업체의 주거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중도금대출* 을 받고 잔금과 중도금대출건에 대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장확보자금을 신청함 * 중도금대출 :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자금으로(또는 자기자본) 기 납부완료	×
사례4	A업체는 산단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며, 분양권 금액에는 중도금대출* 이 포함되어 있음. 중도금대출은 최초(초기)분양이 아니어서 분양권 매도자가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건임. 잔금과 중도금대출건에 대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장확보자금을 신청함 * 중도금대출 :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은행자금으로(또는 자기자본) 기 납부완료	×

※ **주차장설치자금 심사기준**

- **(공장확보자금 지원시 한도증액 지원)** 기존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공장확보자금 지원대상(신축·증축)***이 옥상·지하 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총 건축비용이 기존 공장자금의 지원한도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한도 5억원을 더하여 **총 35억원 한도이내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함**

* 신축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체가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증축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체가 현재 제조시설면적을 늘리기 위해 공장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 **(주차장 설치건에 대한 건별지원)**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제조업체로 **공장을 신축하지만 공장확보자금 지원이 안되는 대상***과 공장설립 이후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비용에 대해 최대 5억원 한도이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함**

* 현재 자가공장을 운영중인 업체가 공장이 협소하여 신규로 공장을 큰 규모로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장확보자금은 지원될 수 없으므로(신축자금은 임차공장일 경우만 지원)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해야 함

<세부 심사기준>

- △ 시설자금으로 지원받아 상환중인 잔액이 있는 경우 30억원 범위내에서 공장자금을 지원하며 총 지원한도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차장 설치비용으로만 지원함 (최대 5억원)**
- △ 공장확보자금 신청기업이 부설주차장설치건에 대해서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설치(법정대수 초과분만 해당함)에 대한 공사비를 별도산출하여 한도산정**
※ **법정대수초과분 설치비용=주차장설치 총비용÷전체 주차대수×법정대수 초과대수**
- △ 주차장이용에 필요한 시설인 카리프트 설치비용도 포함하여 지원함
- △ 옥상 및 지하주차장은 **공장신축과 증축비용에 주차장설치비용이 포함되므로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함 (개별건도 공장확보자금으로 지원결정통보)**
(지원결정통보서내 시설명 : 공장신축(연면적 xxx㎡), 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기계식 주차장(연면적 xxx㎡), 철골주차장(연면적 xxx㎡))

2 구비서류

구분	서 류	비 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제출 생략	
	제조업증빙서류	- 제조면적500㎡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면적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신 청 서	-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정양식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기계	구입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탈로그 (또는 도면)	-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공장	공장설립승인서 (매입,신/증축 공통)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로 대체함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로 제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철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 또는 사후에 공장등록증 제출로 같음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제출생략 - 증축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로 제출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제조면적 500㎡ 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신/증축)	건축허가서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임차공장증빙(증축제외)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재 유효사항 발급)
		도시개발 이전대상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주차장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시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건축물관리대장		-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매입, 신/증축 공통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매매계약서 포함)으로 대체 가능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추가 ▶집단중도금 대출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실행내역서 추가
		건축	건축허가서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2. 벤처창업자금

1 지원개요

1 지원목적

-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창업기반을 조성

2 지원규모 : 기계공장확보자금 지원한도 420억에 포함

3 지원대상 :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7년 이내로 벤처기업(벤처예정기업 포함)이거나 이노비즈 기업 또는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창업 3년 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기계구입(스마트공장도입기업 포함) 및 공장확보자금(연구소자금 포함) 및 벤처창업자금 합산총액(대출잔액기준)이 총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형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경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④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또는 운전자금)의 저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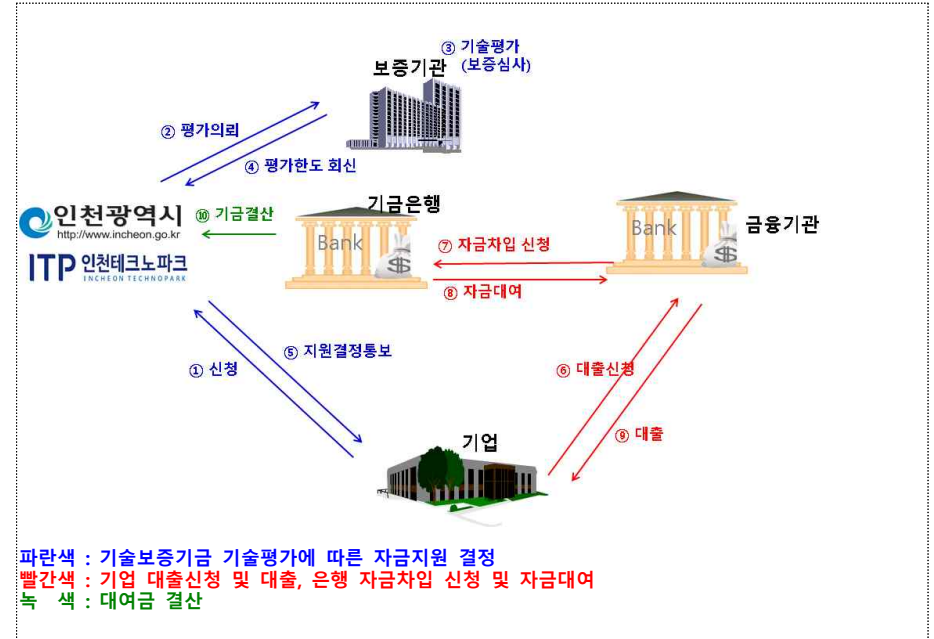
지원 규모	구분	지 원 사 업	업체당 용자한도	용 자 기 간	대출금리	
420억원 (업체당 총35억원 이내)	기계 구입 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기 본	일반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대출금리 (I)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 대	스마트공장도입	2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9%p (V)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공장 확보 자금 (업체당 35억원 이내)	공장 확보 (업체당 30억원 이내)	공장	3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대출금리 (I)
			연구소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주차장확보 (업체당 5억원 이내)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벤처 창업 자금 (업체당 7억원 이내)	기계구입자금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5%p (II)	
	운전자금		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30억원	재해 자금	재해기업	2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무이자 (IV)	

※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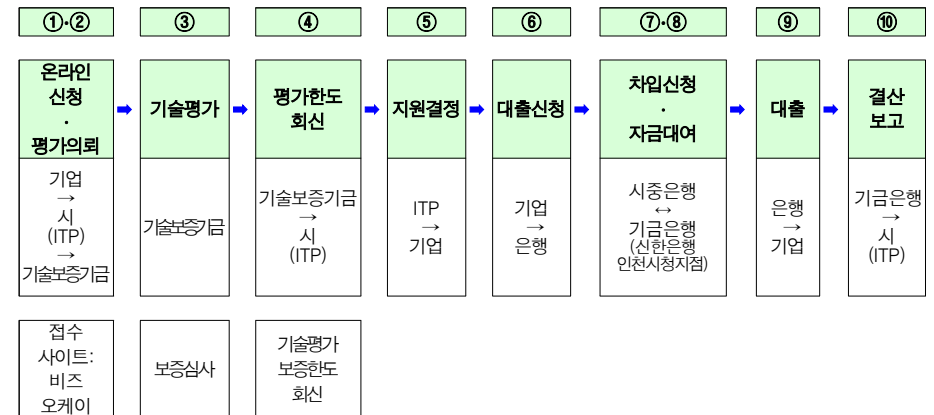
기준 대출금리	기준대출금리=사업운영원가 1) 사업운영원가 : 신규기준COFIX(자금조달비용)+은행취급수수료0.8% 2) 적용 COFIX : 전분기 종료일의 공시자료 * 산출금리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3) 변동주기 :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변경)		
	구분	자금명	사업별 기업대출금리
사업별 대출금리 체계	I 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기준대출금리
	II 그룹	벤처창업자금	기준대출금리-0.5%p
	III 그룹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기준대출금리+0.2%p
	IV 그룹	재해기업자금	무이자
	V 그룹	특별자금	기준대출금리-0.9%p
단, 사업별 기업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기업대출금리는 0.8%로 적용함 (2021년 대출분부터 적용, IV그룹-무이자에는 적용제외)			

2 지원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

① 지원체계



② 업무처리 절차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먼저 끝낸 후 ITP에 추천하는 것도 가능함
 ※ 기보 추천 프로세스 : 자금접수(기업→기보(평가진행)) → 대상추천(기보→ITP) → 지원결정(ITP→기업)

3 심사방법 및 서류

1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요건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업체당 7억원 한도 이내
 - 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 이내
 - 기계/공장/벤처창업자금 지원잔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지원총액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 이전에 계약서상 지불된 금액(계약금, 중도금 등)
기타	- 시설금액과 별개로 운전자금만도 지원이 가능함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시설자금 변동사항 처리 · 변경불가 : 신청시 확정된 지원시설(기계, 시설)의 타시설 대체 불가 · 변경가능 : 규격, 제조업체, 수량 등의 경미한 사안 ※ 해당시설의 지원결정금액 범위 내에서만 변경 가능 - 은행이관 관련사항 · 시설은 대출기간이 장기(8년)임을 고려하여, 타 은행으로 이관을 하더라도 계속 지원

※ 기술평가가 의외 (ITP → 기술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에서 회신하는 보증한도로 지원결정함

2 심사서류 (온라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업종증빙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창업보육시설 입주확인서 등 ※ 벤처예정기업, 기술평가 B등급 이상기업(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업종증빙서류 제출생략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국세 및 지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시설구입 (추가)	구입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탈로그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3. 재해기업자금

1 지원개요

1 지원목적

- 재해 피해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

2 지원규모 : 30억원

3 지원대상

- 공장 및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 자금 또는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자연재해 : 홍수, 태풍, 지진, 폭설, 가뭄 등의 자연현상 재해 등
 - 인적재난 : 화재, 폭발, 전기, 가스, 건물붕괴, 승강기사고 등
-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 제외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제조업만 해당)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제조업만 해당)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④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무이자 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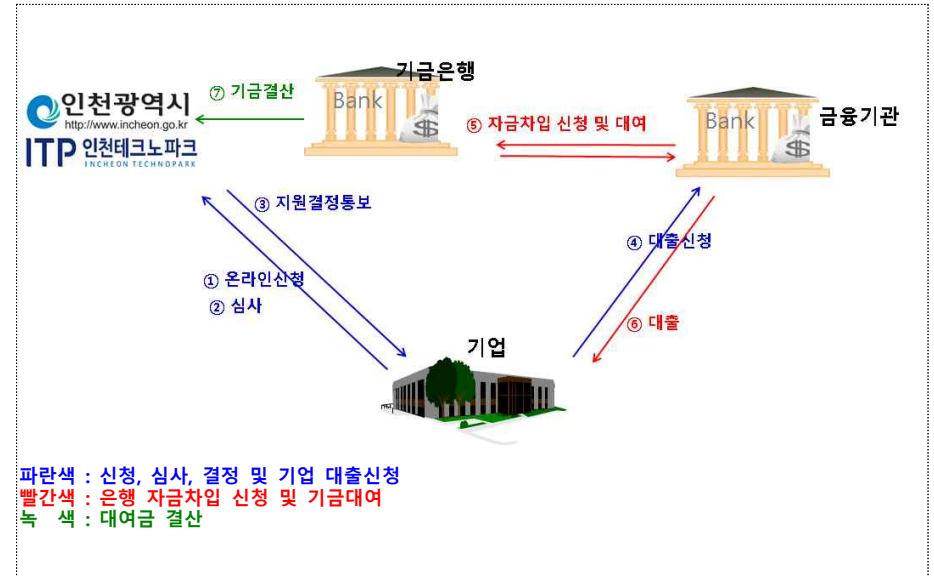
지원 규모	구분	지 원 사 업	업체당 용자한도	용 자 기 간	대출금리	
420억원 (업체당 총 35억원 이내)	기계 구입 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일반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대출금리 (I)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 대	스마트공장도입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2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9%p (V)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 확보 자금 (업체당 35억원 이내)	공장확보 (업체당 30억원 이내)	공장	3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대출금리 (I)
			연구소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주차장확보 (업체당 5억원 이내)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벤처 창업 자금 (업체당 7억원 이내)	기계구입자금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5%p (II)	
			운전자금	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30억원	재해 자금	재해기업	2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무이자 (IV)

※ 대출금리

기준 대출금리	기준대출금리=사업운영원가		
	1) 사업운영원가 : 신규기준COFIX(자금조달비용)+은행취급수수료0.8% 2) 적용 COFIX : 전분기 종료일의 공시자료 * 산출금리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3) 변동주기 :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변경)		
사업별 대출금리 체계	구분	자금명	사업별 기업대출금리
	I 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기준대출금리
	II 그룹	벤처창업자금	기준대출금리-0.5%p
	III 그룹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기준대출금리+0.2%p
	IV 그룹	재해기업자금	무이자
V 그룹	특별자금	기준대출금리-0.9%p	
단, 사업별 기업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기업대출금리는 0.8%로 적용함 (2021년 대출분부터 적용, IV 그룹-무이자에는 적용제외)			

2 지원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

1 지원체계



2 업무처리 절차



3 심사방법 및 서류

1 심사방법

○ 업종, 지원요건 확인,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심사
- 기존지원, 중복지원 관계없이 지원
 - ※ 구청 및 중앙정부 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 적용제외
- 현장실사를 통해 화재 등 재해피해 확인
- 사업장 밖의 부대시설 피해에 대해 지원할 경우 부대시설에 대한 신청업체의 사용권 확보 유무, 건물용도의 적법성 등을 확인
-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 피해건에 대한 자금지원은 동일년도에 1회로 제한
 - ※ 3월에 화재피해로 6억원(이차보전 포함)을 지원받은 경우 7월에 화재가 다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원불가

○ 지원한도 산정

- 자연재해는 재해확인증상 피해금액 이내, 화재는 업체 작성 확인서(피해금액 별도증빙)상의 피해금액 이내로 지원
- 업체당 2억원 한도 이내
 - ※ 매출액의 1/3 이내기준 적용제외
-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시 기금(최대 2억원)과 협조용자 (최대 15억원)로 최대 17억원까지 지원
- 자금 간 우선지원순위는 없고 두 개 자금으로 동시지원도 가능하며,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기업선택에 따라 기금 또는 협조용자 또는 기금 및 협조용자로 지원

피해규모	지원예시
2억원	기금용자로만 2억원지원 가능
	협조용자로만 2억원지원 가능
	기금용자 1억원+협조용자 1억원으로 총 2억원 지원 가능
17억원	기금용자로만 2억원지원 가능
	협조용자로만 15억원지원 가능
	기금용자 2억원+협조용자 15억원으로 총 17억원 지원 가능

2 구비서류

구분	서류	비고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업종 증빙서류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비제조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부대시설(창고)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확보 및 용도확인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재해확인서	소정양식 (피해금액 별도증빙)	
	피해금액 증빙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자연재해	재해확인증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화재, 폭발	화재증명원 등	소방서 발급

4. 상환유예제도

구분	내용
상환유예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중인 업체 ※ 시설자금 지원업체라도 이차보전으로 지원(12~13년)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상환유예 인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해, 설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화재,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 납품업체부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계약수주로 원부자재구입을 위해 자금이 크게 소요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시설·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시 승인절차 필요)
상환유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신청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만기연장 불가, 대출금 만기일 범위이내)
상환유예 처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검토요청(업체→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 또는 시 검토요청(ITP) ⇒ 상환유예신청서 제출(업체→ITP) ⇒ 승인공문발송(ITP→업체·은행) 1) 상환유예신청서 제출 전에 업체에서는 사유 증빙서류와 함께 ITP에 공문으로 유예검토요청 (은행 및 보증기관 사전확인 필수) 2) 상환유예 인정범위일 경우 유예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해당업체에 신청서 제출안내 ※ 기존 상환유예 인정사유가 아닐 경우 시 승인을 거쳐 처리 3) 상환유예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소정양식을 업체에서 작성, 은행확인도장 날인, 날인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같이 원본제출 4) 상환유예 신청서 접수 및 내부결재를 득한 이후 승인공문 발송